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배현진·유상범·김성원

강승규・고동진・김종양

정희용 • 박정훈 • 김기현

우재준 • 장동혁 • 김희정

김태호 • 박수영 • 김기웅

김장겸 • 김대식 • 조지연

의원(18인)

제안이유

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, 관광수요의 다양화, 코로나19로 인한 치유와 일상회복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등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 광시설, 치유관광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음.

또한, Global Wellness Institute(2023)에 따르면, 2022년 세계 웰니스 관광의 시장 규모는 약 6,510억 달러에 달하며, 세계 웰니스 경제규모는 5조 6,000억 달러를 기록했음.

이와 같이 치유관광산업 성장과 중요성,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, 대상, 사업적 범위,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,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,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,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,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,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,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,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 거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, 동 법을 근거로 체계적 연구·개발을 위한 기초현황 및 통계자료 구축, 치유관광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통하여 치유관광의 성장과 지역관광과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관광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여,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의 창출 및 치유관광을 추구하고 소비지출 수준이 높은 치유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 동을 "치유관광"이라 정의함(안 제2조).

- 다.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라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(안 제7조).
- 마.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).
- 바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 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(안 제11조 및 제12조).
- 사.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·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,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·운영,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, 치유관광산업의 연구·개발,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촉진 등을 실시하고,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치유관광사업자, 단체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음(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).
- 아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·도지 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(안 제20조

부터 제22조까지).
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치유관광"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.
- 2. "치유관광자원"이란 경관, 온천, 음식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.
- 3. "치유관광시설"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- 4. "치유관광산업"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관련 자원 과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

업을 말한다.

- 5. "치유관광사업"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(業)을 말한다.
- 6. "치유관광사업자"란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.
- 7. "치유관광산업지구"란 치유관광자원,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등을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- 8. "치유관광서비스"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 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 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
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

- 제5조(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 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
 - 3.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
 - 4.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 - 5. 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 - 6.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,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 - 7.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
 - 8.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 - 9.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

-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(이하 "시 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,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협력체계의 구축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

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- 제8조(치유관광사업의 등록) ①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 준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등록취소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치유관광사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 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된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,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치

유관광사업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- 제10조(치유관광사업의 양수 등) ① 치유관광사업을 양수(讓受)한 자 또는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 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렁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 - 1.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
 - 2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가(換價)
 - 3. 「국세징수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
 -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
 - ③ 치유관광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,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치유관광사업 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 다만, 그 승계한 치유관광 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·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

다.

-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(이하 "우수치유관광시설"이라 한다)을 인증할 수 있다.
 - ②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.
 - ③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기준·절차·방법·유효기간·갱신 및 승계, 인증에 관한 평가, 인증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인증의 취소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

에 따라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

- 3. 사업자의 부도·폐업·파산·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인증받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. 다만, 해당하게 된 사업자가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4.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

- 제13조(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 유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,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통 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업 ·연구기관 및 단체, 치유관광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・운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

관은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,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·지 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 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, 연구, 개발 등에 관한 사항
 - 2. 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 · 운영 지원
 - 3.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
 - 4. 치유관광서비스 운영 지원
 - 5. 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
 - 6.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사항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치유관광산업의 육성·지원활동을 수 행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4. 제23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·검사를 방해하는 경우
- ⑥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,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치유관광산업의 연구개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·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, 대학,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치유관광산업 발전에 필요

한 연구·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연구·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, 대학,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· 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 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추 진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- 2.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,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

-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·절차와 지원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재정지원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치유관광사업자, 단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9조(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·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

- 제20조(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(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,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같다)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(이하 "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치유관광산업지구의 개념 목표 위치 및 범위
 - 2.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, 프로그램 현황
 - 3.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 방안
 - 4.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
 - 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.
 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
- 2.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
- 3.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·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
- 4.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치유관광산업 간의 적합성
- 5.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해당 시·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 조에 따라 지정된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 - 1.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에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

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한 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

 ·도지사는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에

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·체험프로그램·교육 개발 등 에 관한 사항
 - 2.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·홍보·관광객 유치 확대
 - 3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23조(보고·검사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, 지원센터,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·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제2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장 벌칙

- 제25조(벌칙)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 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

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

- 제27조(과태료) 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 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 관 등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